

# 2008년부터 달라지는 주요 산림시책

제 목	종 전	달라지는 내용
도시림 대상지역 조정	○ 도시림 현황통계 및 실태 조사시 조사대상을 시의 '면' 지역까지 포함	○ 시의 '면' 지역을 제외한 모든 '읍' 지역 이상으로 변경
도시림 등의 조성·관리계획수립	○ 도시림 조성·관리계획(10년), 가로수 조성·관리계획(5년) 으로 구분 운영	○ 도시림 등의 조성·관리계획으로 통합 운영(10년 계획)
녹색자금 사용용도 확대	<신규>	○ 녹색자금 사용용도에 해외 산림자원 확보 및 해외산림 기능 증진사업 추가
조림시 별채비용 지원	○ 산불 피해지 및 불량 활엽수목 조림시 예정지 정리 사업비만 지원	○ 예정지 정리 사업비에 별채 비용을 포함하여 지원
유휴토지 조림비 지원 확대	○ 유휴토지 조림시 묘목대 및 식재인건비만 지원	○ 조림목 주위에 부직포(1m×1m) 설치 비용 추가 지원
산림경영계획 지원단가상향	○ 지원단가 : 10,189/ha	○ 지원단가 : 10,180/ha
농작물 재해보험 확대	○ 뚝은 감 재해보험을 시범 사업으로 추진 - 주산지 5개 지역(전남광양·영암·경북 상주·청도, 경남 하동)	○ 뚝은 감 재해보험을 본 사업으로 전환 - 대상지역 전국으로 확대
임업인 안전공제 개선	○ 재해보상금 : 15백만원 (농업인의 42% 수준) ○ 공제료 : 53,930원	○ 재해보상금 : 30백만원(농업인의 67% 수준) ○ 공제료 : 66,200원(잠정)
산림분야 세제개선	○ 준보전산지 : 종합부동산세 부관	○ 준보전산지 중 산림경영계획 수립후 사업중인 임야는 별도 합산 과세
전문임업인 임야 매입 자금 지원확대	○ 임야매입자금 융자지원 - 임야매입 면적 중 보전 산지비율 90%이상 - 지원단가 : 1만원/3.3㎡	○ 임야매입자금 융자지원 - 임야매입면적 중 보전산지 70%이상 - 지원단가 : 5만원/3.3㎡
산림사업종합자금 사전융자확대	○ 일부사업 사전융자지원 - 조림, 숲가꾸기, 단기임산물 수집, 산림조합육성 ○ 자부담이 있는사업 : 사업완료후 융자	○ 자부담이 없는 운영자금은 모두 사전융자로 지원 - 해외산림투자, 전문임업인 육성(장기수 조림·숲가꾸기, 기타사업중 운영자금)추가 ○ 자부담이 있는사업: 자부담 집행후 잔액융자 - 사립수목원 조성, 장뇌삼 생산, 단리산림소득자금, 조림용묘목생산(묘목생산), 목가공시설 지원, 보드류시설지원, 국산원자재, 폐목재구입, 유통센터원료구입, 수출원자재구입, 임업기계화
산림사업종합자금 사전융자확대	○ 세부사업 전액 보조 지원 <신규> <신규>	○ 생산소득사업의 경우 사업비의 20%를 마을 공동으로 추가 부담 ○ 마을운영매니저 지원 - 생산품 판매, 유통, 교육, 홍보, 운영관리 업무지원 - 60명, 594백만원 ○ 평가결과 우수마을에 대해 추가사업비 지원 - 영영, 조성, 설계 등 3개 부문
단기임산물 유통 구조 개선	<신규>	○ 임산물 지리적 표시 인증품목의 특성 등을 고려하 여 명품·브랜드화 추진

관련법규 및 시행일	변경사유 및 효과	관계부서
○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(2008.7월)	○ 도시림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	도시숲 정책팀 (042-481-1406)
○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20조 (2008.7월)	○ 도시림, 가로수를 체계적으로 조성 · 관리	도시숲 정책팀 (042-481-1406)
○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58조 (2008.7월)	○ 해외조림 활성화	해외자원팀 (042-481-4088)
○ 시책 (2008.1.1)	○ 조림사업의 질 향상	산림자원팀 (042-481-4185)
○ 시책 (2008.1.1)	○ 조림목 사후관리 강화	산림자원팀 (042-481-4185)
○ 농림사업시행지침 (2008.1.1)	○ 산주의 산림경영 부담 경감	경영지원팀 (042-481-4191)
○ 농림사업시행지침 (2008.1.1)	○ 짧은 감 재배임가의 소득안전망 마련	경영지원팀 (042-481-4191)
○ 농림사업시행지침 (2008.1.1)	○ 임업인의 재해보상금 확대	경영지원팀 (042-481-4191)
○ 지방세법 시행령 제 131조의2(2008.1.1)	○ 임업인의 세금부담 경감	경영지원팀 (042-481-4191)
○ 임업정책 자금집행지침(2008.1.1)	○ 경영임지 확충을통해 자립기반구축	경영지원팀 (042-481-4191)
○ 농림사업시행지침(2008.1.1)	○ 임업인의 자금부담 경감	경영지원팀 (042-481-4191)
○ 임업정책 자금집행지침(2008.1.1)	○ 분재주민의 사업추진 동기부여 및 형평성 제고 ○ 사업추기 마을운영의 효율성 제고 ○ 마을간 건전한 경쟁 유도	산촌소득팀 (042-481-4124)
	○ 임산물 유통기반 확충	도시숲 정책팀 (042-481-1406)

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디자인 개발비:420백만원</li> <li>- 포장라인 보완:339백만원</li> <li>○분재재배의 유통물류비 절감을 위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해 유통차량 지원</li> <li>- 18대, 94백만원</li> <li>○임산물유통센터의 저온저장시설 및 선별장 시설보완(210백만원)</li> </ul>
산지도속증대 기반조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&lt;신규&gt; 원단가</li> <li>&lt;신규&gt; - 40백만원/개소</li> <li>○ 밤·잣 생산장비 지원단가</li> <li>- 수중펌프 용량:5마력</li> <li>- 굴삭기 0.17㎡기준 48백만원/대당</li> <li>○수실류 작업로 지원단가</li> <li>○독립가·임업후계자 - 3백만원/km</li> <li>○조경수 관정시설 지원단가</li> <li>- 4백만원/km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경제성이 없고 폐원 사태에 있는 밤나무 재배지에 대하여 대체작목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비 지원</li> <li>○잣나무 조립지 등 작업로 시설을 위한 장비 지원</li> <li>○밤·잣 생산장비 지원단가</li> <li>- 1톤 미만의 굴삭기 실소요액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수실류 작업로 지원단가</li> <li>- 5백만원/km</li> <li>○조경수 관정시설 지원단가</li> <li>- 20백만원/개소</li> <li>- 수중펌프 용량:3마력 &lt;삭제&gt;</li> <li>○독립가·임업후계자 유실수 입지 작업로 시설</li> <li>-5백만원/km</li> </ul>
산림바이오 매스 활용 촉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화목겸용보일러 지원비율</li> <li>- 국비 50%, 지방비 30%, 자부담 20%</li> <li>○ 숲가꾸기 및 목재부산물을 활용하여 펠릿연료를 생산할 수 있는 시설지원</li> <li>○펠릿연료를 사용하는 보일러 보급 시범사업 추진</li> <li>-자연휴양림 4개소(24대)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화목겸용보일러 지원비율</li> <li>-국비 50%, 지방비 40%, 자부담 10%</li> <li>○숲가꾸기 및 목재부산물을 활용하여 펠릿연료를 생산할 수 있는 시설지원</li> <li>○펠릿연료를 사용하는 보일러 보급 시범사업 추진</li> <li>- 자연휴양림 4개소 (24대)</li> </ul>	
사유림 벌채운재로 시설지원	<신규>	○ 벌기령에 도달한 입목의 벌채시 목재운송 장비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시설지원	
목재정보 제공	<신규>	○ 목재생산, 가격정보 등을 산주, 목재업체에 제공	
산림보호강화사업 개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인부임만 지급</li> <li>- 35천원/1인/1일</li> <li>○신청자격</li> <li>- 실업자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, 노숙자</li> <li>- 정기소득이 있는 자(배우자포함) 및 연금수혜자 제외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부대경비 및 조장수당 추가지급</li> <li>- 인부임:35천원/1인/1일</li> <li>- 부대경비:5천원/1인/1일</li> <li>- 조장수당:2천원/1인/1일</li> <li>○신청자격 완화</li> <li>- 산림재해감시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자</li> </ul>	
백두대간 주민소득 지원사업	<신규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지원 제외대상</li> <li>- 마을회관, 찜질방, 휴게소, 마을길 포장 등 생활편의 및 복지시설</li> <li>- 트랙터, 지게차 등 고가 장비</li> <li>- 주민이 부담해야 할 인건비·관리비 등 경상적 경비</li> <li>○지원 한도액 설정</li> <li>- 공동사업:마을별 참여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가구당 3백만원을 기준으로 총 2억원을 초과할 수 없음.</li> <li>- 개인사업:10백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</li> <li>- 지원한도액을 초과하여 지원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장·군수가 도지사의 승인을 득한 후 지원할 수 있음</li> </ul>

○ 농림사업시행지침 (2008.1.1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밤나무 재배지의 구조조정을 통한 경쟁력 강화</li> <li>○ 수요자 요구반영</li> <li>○ 굴삭기 용량을 축소하고 지원대수확대</li> <li>○ 단가 현실화</li> <li>○ 관정규모를 축소하여 지원개소 확대</li> <li>○ 수요자 요구가 많은 관정시설로 전화하여 지원</li> <li>○ 단가현실화</li> </ul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산촌소득팀 (042-482-4157)</p>
○ 농림사업시행지침 (2008.1.1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자부담을 낮춰 임가의 부담 경감</li> <li>○ 산림부산물의 바이오에너지 이용 활성화</li> </ul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목재이용팀 (042-481-4201)</p>
○ 농림사업시행지침 (2008.1.1)	○ 산주들의 벌채비용 부담경감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목재이용팀 (042-481-4201)</p>
○ 임업정책 자금집행지침 (2008.1.1)	○ 목재유통 활성화 및 국산재 이용촉진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목재이용팀 (042-481-4201)</p>
○ 시 책 (2008.1.1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임금단가 현실화</li> <li>○ 사업수행능력과 자질을 우선 고려하여 사업성과 제고</li> </ul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산불방지팀 (042-481-4255)</p>
○ 농림사업시행지침 (2008.1.1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제외대상을 명확히 규정하여 주민소득 사업만 지원</li> <li>○ 마을 공동사업 및 작목반 중심으로 지원</li> </ul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백두대간보전팀 (042-481-4293)</p>